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

제출년월일 : 1998년10월 일
제 출 자 : 광 진 구 청 장

1. 議決注文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提案理由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작고 효율적인」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국 등의 구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가. 1실 5국 체제인 구본청의 局을 5局으로 축소

기획실 + 총무국 ⇒ 행정관리국

나. 局명칭 변경

기획실 + 총무국 ⇒ 행정관리국
시민국 ⇒ 생활복지국
도시정비국 ⇒ 도시관리국

다.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변경

라. 4담당관 23과인 課를 1담당관 22과로 4개 課 축소

기획예산담당관 + 문화공보담당관 ⇒ 기획공보과
전산정보담당관 + 민원봉사과 ⇒ 민원정보과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과
위생과 + 환경보전과 ⇒ 환경위생과

마. 課명칭 변경

사회진흥과 ⇒ 사회문화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민방위과

재산회계과 ⇒ 재무과

부과1과 ⇒ 세무1과

부과2과 ⇒ 세무2과

청소과 ⇒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과(局 주무과로 변경)

4. 主要討議課題

없 음

5. 參考事項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구등에관한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서울특별시 행정자치부와 합의 되었음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구 본청의 국장의 직급,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동장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을 두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명사항·정보·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4. 집단민원 및 방문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는 총무과, 기획공보과, 민원정보과, 사회문화과, 민방위과를 둔다.

②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사관리·보안·행사·회의에 관한 사항
2. 인사·조직·교육훈련·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동행정 및 선거,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4.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기획공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교부에 관한 사항
3. 법제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4. 홍보·보도에 관한 사항

④민원정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문서·관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2.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3. 호적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기획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⑤사회문화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운동의 추진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업의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 및 관련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⑥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안전관리 관련업무의 총괄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민방위 기본운영·전시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병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재무국) ①재무국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를 둔다.

②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회계에 관한 사항

3.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5.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세무1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 시·구세 징수결정 및 세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관련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지역개발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인관리세목 세원조사에 관한 사항
5. 구세입(세외수입포함)의 총괄 및 현계(세입징수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세무2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과 소관 세목의 징수결정 및 세입금 현계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세·차량취득세·차량등록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민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면허세·사업소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⑤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토지공개념제도 및 외국인 토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생활복지국) ①생활복지국에는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를 둔다.

②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의료보호대상자 및 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허가와 지도 및 공장등록과 관련 사항
2. 물가조사·지도단속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3.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④환경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대기·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3.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⑤청소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청소차량 등 장비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 수거·운반 및 환경미화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일반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수거·판매에 관한 사항
5.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분뇨정화조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관리국) ①도시관리국에는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도시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
2. 상세계획구역내의 건축허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
4.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민영주택 및 주택개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④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 구 건축시설업무(영선업무 포함) 집행계획

⑤공원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산림보호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의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교통국) ①건설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둔다.

②건설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지하도·하천 및 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사용 및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3.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4.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도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
2.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하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도시설 계획·집행 총괄에 관한 사항
2. 하수도·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⑤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⑥교통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및 주차시설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2.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주·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4. 운수과징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10조(담당관·과의 분장사무) ①담당관·과의 분장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국·과·담당관 업무분장중 제2조 내지 제9조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나, 새로운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1조(설치)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제12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동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시행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기획실" 또는 "총무국"은 "행정관리국"으로 보고, "시민국"은 "생활복지국"으로 보며, "도시정비국"은 "도시관리국" 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하부조직) 사무국장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기획실"을 " 감사담당관" 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총무국"을 " 행정관리국" 으로, 제3호가목중 "시민국"을 " 생활복지국" 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도시정비국"을 " 도시관리국" 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의회사무국 의정계에 비치하고 의정계장이 관수하며"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의정업무담당 주사가 관수하며"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중 "국·실장"을 "국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광진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감사담당관 민원관리계장"을 "민원관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광진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재무국장"으로, "감사담당관"을 "세무1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하며, "재산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4조중 "감사담당관의 세수관리계장"을 "세무1과 세외수입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⑦서울특별시광진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정보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관수한다.

⑧서울특별시광진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위임사무의 주관국란중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재무국(부과1·2과장)"을 "재무국(세무1·2과장)"으로,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하며,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광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광진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하며, "예산계장"을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⑫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공보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하고, "법무담당계장"을 "법무업무담당 주사"로 하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담당계 근무 공무원"을 "기획공보과 법무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⑬서울특별시광진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6조중 "동행정계장"을 "동행정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⑭서울특별시광진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⑮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재산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⑯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재산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재산

회계과"을 "재무과"로 한다.
제46조중 "실장"을 삭제한다.

⑰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산회계과"를 "재무과"로 한다.

⑱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부동산중개업무 담당계장"을 "부동산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⑲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담당계장"을 "가정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⑳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㉑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며,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㉒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공보과장"으로, "재산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노인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㉓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상공계장"을 "상공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담당계장"을 "담당 주사"로 한다.

㉔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중 "담당계장"을 "담당 주사"로 한다

㉕서울특별시광진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㉖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재활용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㉗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㉘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도시계획계장"을 "도시계획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㉙서울특별시광진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하고, 동항4호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교통행정계장"을 "교통행정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㉚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진구(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㉛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동행정계장"을 "동행정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별 표〕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동사무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중곡제1동	광진구 중곡동 259-10	중곡동 237의1을 기점으로 165의1을 경유 162의4에 이르는 도로이남지역과 천호대로와 능동로를 경계로한 서북지역
중곡제2동	광진구 중곡동 125-11	중곡동중 천호대로 북쪽과 중곡동31의1에서 24의2를 경유하여 중곡동 116의6의 서쪽지역
중곡제3동	광진구 중곡동 171-1	중곡동중 236의15를 기점으로 30의36, 28의7을 경유하여 607의3의 중곡동길 이서지역중 중랑구 면목동 경계로 연하는 지역
중곡제4동	광진구 중곡동 18-145	중곡동중 115의9를 기점으로 93의12를 경유, 중랑구 면목동 경계로 연하는 중곡동길 이동지역
능 동	광진구 능동 369-12	능동 전지역
구의제1동	광진구 구의동 237-6	구의동중 광나룻길 이남과 구의동 229의1에서 구의동 243의13을 잇는 이서지역
구의제2동	광진구 구의동 63-7	구의동중 광나룻길 이북지역과 어린이대공원 이동지역
구의제3동	광진구 광장동 509-5	구의동 광나룻길 이남지역중 구의제1동관할을 제외한 지역과 올림픽대교 진입로 이서지역
광 장 동	광진구 광장동 248-24	광장동중 광나룻길과 올림픽대교 진입로를 잇는 도로 이동지역
자양제1동	광진구 자양동 220-196	자양동 226의28에서 220의151에 이르는 구의로 이북지역과 자양동 219의2에서 658의136을 경유하여 610의9의 도로 이북지역
자양제2동	광진구 자양동 678	자양동 608의19에서 679의31에 연하는 이남지역과 216의 21에서 245의 16을 경유하여 구의제3동과 경계로한 도로 이남지역의 송파구와 경계지점 이북지역
자양제3동	광진구 자양동 510-10	자양동 227의7에서 227의1을 경유하여 자양동 590의66에 연하는 도로 이서지역중 성수동 경계 이동지역

동사무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노유제1동	광진구 노유동 13-28	노유동 1의1에서 23의4에 이르는 구의로의 이남지역중에서 23의4에서 236의 147을 경유하여 45에 연하는 동북지역
노유제2동	광진구 노유동 64-11	노유동 45의6에서 236의13을 경유하여 동이로를 연하여 영동대교 인터체인지 이동지역
화 양 동	광진구 화양동 132-48	화양동 전지역, 모진동 전지역
군 자 동	광진구 군자동 53-8	군자동 전지역